

# 「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박 은 희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('24. 12. 31.)
-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사 무 명 :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
- 추진근거
 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

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
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
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
  - 「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9조
 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15조
- 위탁사무 :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 전반
-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사업, 가족관계개선사업
  -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지원사업, 지역공동체지원사업
  -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사업
  - 공동육아나눔터 운영, 구미시가족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
  -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등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- 시설개요
- 소재지 : 구미시 산책길 73(원평동)
  - 규모 : 건물 989.82㎡(지상 3층), 토지 2,393㎡
  - 지원시설 : 어린이북카페, 공동육아나눔터, 상담실, 사무실 등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-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연간 2,219백만원 정도(국 45% 도 14% 시 41%)
- 위탁조건
-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  -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구미시가족센터 통합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  -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, 구미시 가족 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,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,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

- 성과평가결과 : 탁월(98점)
  - 기본사업, 예산 및 회계처리, 복무사항, 시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하고 있음.
  -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 목표량을 달성 다소 미흡
-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재계약 의결
- 적정성 검토 결과 : 적정 ※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- 추진 필요성
  - 운영 기간 내 2023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수기관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(전국 244개 센터 중 24개 센터)
  -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,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(사)아름다운가정만들기에 재계약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## 라. 주요내용

- 관계법령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, 같은 법 시행규칙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같은 법 시행령  
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「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 가족센터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( '24.12.31.)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위탁기관에게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「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」, 「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미시가족센터 사업위탁은 가능할 것이며,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‘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’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, 이를 이행하였음.
- 또한, 구미시가족센터는 202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센터 사업운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근 3년 간 외부 평가 실적도 우수하여, 다수의 수상실적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은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사회 변화와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맞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·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

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 론 요 지

-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감사결과 제출 필요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